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김영미 의원)

의안 번호	20-119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8. .

발 의 자 : 김영미, 강명숙, 권영숙,
김기석, 김성희, 김종선
김진천, 서종수, 신종갑
이민석, 이필레, 이흥민
장덕준, 정혜경, 조영덕
채우진, 최은하, 한일용

1. 개정이유

마포구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도가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운영 시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·운영 관련 규정 개정
(안 제9조제3항)

3. 관계법령

- 「건축법」 제53조
- 「건축법시행령」 제63조

4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

5. 입법예고: 2020. 8. 28.~ 2020. 9. 1.(의견 없음)

6. 조례안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위축할 수 있다”를 “위축해야 한다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·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위 촉해야 한다.</p>

【관 계 법 령】

■ 건축법

제5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

■ 건축법 시행령

제6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

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1.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
2.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
3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4. 문화 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
5.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)
6. 노유자시설
7. 수련시설
8.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
9.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건축과 조선희
연 락 처	02-3153-9442